
Policy and Law Report _Vol.19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7.3.~7.9.) -

July 10, 2023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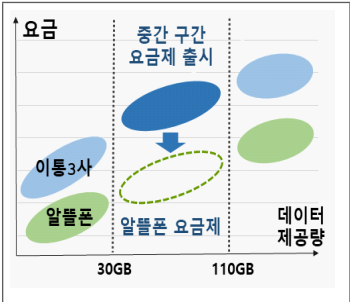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5. 지난 주(7/3~7/9)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는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함 하반기 경제여건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으며,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향후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함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물가는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되어 연간으로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한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❶ 경제활력 제고, ❷ 민생경제 안정, ❸ 경제체질 개선, ❹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함	2023-07-04

부처	내용	일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관 협업으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 도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 '에이블(ABLE)**'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여기업들과 함께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함 * 협의체명 : ABLE (Alliance of Blockchain Leading digital-Economy) ** 과기정통부는 작년부터 올해 4월('22.6~'23.4, 총 20차례)까지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 시즌1'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5월부터 개최한 시즌2부터는 민간단체·협회를 직접 찾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나가는 등,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순차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보완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함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기술로, ICT, 금융 등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적용 분야와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야이자 웹 3·NFT·STO 등 주요 서비스와 관련 산업이 매년 새로이 발굴되는 분야이기도 함 이렇듯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국내 중소 블록체인 기업이 기술과 서비스를 상품화 하더라도 판매처를 찾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체적으로 시장 수요를 예측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미 해당 서비스의 유행이 지나거나 더 우수한 기반기술이 발굴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 ABLE 개요 • (목적) 블록체인 관련 기업·기관 상호 간의 수요·공급사항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연결하고, 관련 분야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단일 창구로 일원화하여 소통 추진 • (구성) ①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과 ②블록체인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으로 구성되며, '23년 6월 현재 약 64개 회원사 참여(자문기구 포함) • (역할) ① 투자유치·해외진출, 법·제도, 기술 분야 네트워킹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② 수요·공급자 간 제품·기술 설명의 장 마련, ③ 정책·트렌드 공유 정례회의 개최, ④ 지속적 소통을 위한 네트워킹 등 수행	2023-07-05
	•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함 디지털 심화시대에 통신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어, 국민 누구나 편안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 (가계통신비 지출추이) 12만원('20) → 12.4만원('21) → 12.8만원('22) → 13만원('23.1Q) 그간 정부는 통신산업의 독과점화 특성을 고려해 시장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억제, 후발사업자 육성 등 다양한 경쟁활성화 정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LGU+가 SKT, KT에 비견되는 3위 사업자로 성장하고 알뜰폰 시장규모도 확대되었음 그러나, 통신3사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약화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2023-07-06

부처	내용	일시																																			
	특히, 과거 통신업계는 과감한 투자로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적 ICT 제조업, 독자적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한 ICT 강국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나, 현재는 28GHz 대역의 설비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통신3사 주파수 할당 취소('22.12월, '23.6월), KT 전국망 장애('21.10월) 등과 같은 네트워크 투자·관리 미흡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래 ICT 분야 경쟁력 확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2.15) 이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우선적으로 이용자 수요가 높은 5G 요금제 중간구간(30~110GB) 및 청년·고령층의 선호구간에서 혜택을 강화한 신규 요금제 55종 출시(3~7월)를 유도함함 <요금제 다양화>  <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효과(SKT 예시)> ■ (일반) 월 35GB 이용자는 월 7천원(10%) 절감 ※ 69,000원(110GB) 요금제 → 62,000원(37GB) 요금제로 변경 ■ (청년) 월 30GB 이용하는 청년은 월 1만원(14%) 절감 ※ 69,000원(110GB) 요금제 → 59,000원(36GB) 요금제로 변경 ■ (고령층) 월 10GB 이용하는 고령층은 월 4천원(8%) 절감 ※ 49,000원(8GB) 요금제 → 45,000원(10GB) 요금제로 변경 ■ (알뜰폰) 일반 요금제 대비 월 30~40% 절감 가능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다변화 - 신규사업자 전용 주파수 할당, 투자비용·설비구축 등 진입장벽 완화 -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재도입, 대량 선구매 할인제도 본격화 ②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통신요금 인하유도, 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 - 요금제 선택권 확대, 최적요금제 고지 도입, 단말에 따른 요금제 강제 금지 -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부담 완화,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③ 국민 누구나 고품질 네트워크를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 활성화 - 5G 전국망 조속 구축, 28GHz 대역 이용처 다양화, 6G 시대 기술기반 조성 -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조기 구축, 유선망을 광케이블로 100% 전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비전 및 주요 과제> <table><tr><td>비전</td><td colspan="8">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td></tr><tr><td rowspan="2">추진 전략</td><td colspan="2">전략 1</td><td colspan="3">전략 2</td><td colspan="3">전략 3</td></tr><tr><td colspan="2">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td><td colspan="3">경쟁 활성화 통한 국민 편익 제고</td><td colspan="3">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td></tr><tr><td rowspan="2">세부 방안</td><td>신규社 진입 지원</td><td>경쟁력있는 알뜰폰社 성장 지원</td><td>요금 제도 개선</td><td>이용자 선택권 확대</td><td>품질 정보 제공</td><td>무선망 투자 촉진</td><td colspan="2">유선망 고도화</td></tr></table>	비전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								추진 전략	전략 1		전략 2			전략 3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세부 방안	신규社 진입 지원	경쟁력있는 알뜰폰社 성장 지원	요금 제도 개선	이용자 선택권 확대	품질 정보 제공	무선망 투자 촉진	유선망 고도화		
비전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																																				
추진 전략	전략 1		전략 2			전략 3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세부 방안	신규社 진입 지원	경쟁력있는 알뜰폰社 성장 지원	요금 제도 개선	이용자 선택권 확대	품질 정보 제공	무선망 투자 촉진	유선망 고도화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령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7.4. 시행)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도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외국통화의 매매·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거주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본거래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거래금액 기준을 ‘미화 2만달러 이하’에서 ‘미화 5만달러 이하’로 확대하는 등 외환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제18조제4항제4호, 제33조제1항제4호, 제40조제1항제1호 등)	2023-07-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7.4. 시행)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에 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에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9154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 이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의 시설 기준 등을 정하고,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중단 시 보고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보호조치 의무가 있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의 범위 (제37조제1항 신설) -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전산실 바닥 면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전년도 매출액 및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보고 절차 및 방법 (제40조 신설)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연속해서 30분 이상 중단된 경우 또는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중단되어 그 중단 기간의 합이 45분 이상인 경우에는 문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③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제41조 신설) - 임차한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출입 통제를 하는 등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임차한 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설을 임대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2023-07-0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 통상부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7.5. 시행)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첨단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 19205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 이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 9조의2 신설, 제12조 등)	2023-07-05
중소벤처 기업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7.4. 시행)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추가하고, 임직원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 19178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 이에 따라, 벤처기업은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외부 전문가의 경우 벤처기업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2조의3제2항제13호의2 신설, 제4조제 8호, 제11조의3, 제11조의4 등)	2023-07-0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7.4. 시행)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을 선정·지원하고,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76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19호, 2023. 6. 7. 공포, 7. 4.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추진 사업과 지정신청을 위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제1항, 제 6조제3항, 제12조제1호 등)	2023-07-0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방송통신위원회	• 「<u>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u>」(2023.7.4. 시행)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이행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1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면서 5명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19153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 이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이행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5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5명의 상임위원을 지명하도록 하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30조의8제1항, 제40조의5제1항, 제40조의6 등)	2023-07-03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일반 누진세율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 후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합산배제 임대주택 유형 추가 (안 제3조제1항)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에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등 추가 ②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유형 추가 (안 제4조제1항)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유형에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추가 ③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청의무 면제 (안 제4조의3제4항) -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 후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의무 면제 ④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 조정 등 (안 제4조의4) -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삭제하고, 최초 신청 후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의무 면제 ※ 의견 제시기간 : 2023/7/6(목)~8/16(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로 제출	2023-07-06
환경부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 사업에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로서 처리시설 규격(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시설’을 추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제2021-95호, 의결’21.2.22)의 권고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 준수의 혼란 및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위반행위의 위반차수와 누적회차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023-07-0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 사업에 ‘재활용시설 중 1일 시설규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추가 (별표1) ② 환경보건센터 위반차수 계산을 위한 기간 계산 기준을 “행정처분 한 날”에서 “행정처분 한 날과 그 처분 후”로 개정 (별표4) ※ 의견 제시기간 :2023/7/3(월)~8/14(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로 제출	2023-07-03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환경기술·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의 현실화, 환경산업체 지원근거 조문 보완, 법률 구조 정비 등을 통해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을 촉진하여 환경보전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정의를 개정함 (안 제2조)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도록 함 (안 제5조, 제6조) ③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산업체 대상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등에 대한 지원근거 보완·신설함 (안 제15조~제20조) ※ 의견 제시기간 :2023/7/7(금)~8/18(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	2023-07-07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의 제한을 완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사업장의 근로자 대비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 간 수혜 수준의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규모를 다양화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의 기제로 작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3-07-0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 (안 제46조제4항제1호)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사용한도를 현행 100분의 80 이내에서 100분의 80, 90 이내로 확대 ② 기본재산 사용요건 및 사용범위 확대 (안 제46조제4항제3호, 안 제46조제5항 및 제6항 삭제)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 또는 재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의 근로자로 나눈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완화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를 재난 또는 경영상 위기와 무관하게 100분의 20, 25, 30 범위 이내로 정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7/3(월)~8/14(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디지털노동대응TF)로 제출	2023-07-03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기본재산 중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출연금액, 기본재산의 사용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수혜범위 확대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기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0, 20으로 확대 (안 제26조의2제1호)	2023-07-0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을 기존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재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100분의 50 이상)에서 재난, 경영위기 등과 무관하게 100분의 25, 35, 50 이상으로 선택권 확대 (안 제26조의2제2호 및 제3호) ※ 의견 제시기간 : 2023/7/3(월)~8/14(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디지털노동대응TF)로 제출	
국토 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 대상 범위를 센서 등의 인지능력이 저하된 경우로 축소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도로 유형이 변경된 경우를 보고대상으로 명문화하여 피규제인의 혼란 방지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대상 축소 (안 제26조의3제1항제1호가목) - 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대상을 센서의 인지범위 감소 등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로 축소 ※ 예1) 감지각도 90°센서 4개를 감지각도 360°센서 1개로 변경 - (현행) 보고대상 → (개선) 보고대상 제외 ※ 예2) 감지범위 100m, A社 라이다를 감지범위 100m, B社 라이다로 변경 - (현행) 보고대상 → (개선) 보고대상 제외 ② 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대상 명문화 (안 제26조의3제1항제1호나목) -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연구 계획서에서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한 항목과 보고대상 항목이 동일하도록 명문화 ※ 의견 제시기간 : 2023/7/3(월)~8/12(토)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로 제출	2023-07-0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특허청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행 특허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및 국내외 출원 등의 비용부담 발생 시 납입 부금의 5배까지 저리로 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책 공제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495호, 2023. 6.20. 공포, 12.21. 시행)됨에 따라, 특허 공제사업 준비금 적립·운영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자 함 아울러 국무조정실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인증의 승계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식재산 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법적근거 강화 (안 제9조의5) - 국무조정실 권고에 따라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② 특허공제사업 준비금 적립근거 마련 (안 제28조의5 등) - 공제 부금의 원리금 상환 및 대출금 지급, 그 밖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한 경우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율 - 준비금 적립·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임규정 마련 ※ 의견 제시기간 : 2023/7/5(수)~8/14(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로 제출	2023-07-05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정무위원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화 및 용역의 내용 및 종류, 가격, 용역의 제공 기간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구독서비스 시장도 여러 분야로 확대되면서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구독서비스를 결제한 이후 재화등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독료를 그대로 지불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구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독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비자가 한 결제 주기 동안 재화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구독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의3 신설 등)	2023-07-05
기획재정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시시(cc)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연비 효율이 높은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여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111조의2제1항)	2023-07-0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택시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의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금액에서 40원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2023-07-0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그런데 최근 택시비 인상으로 택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택시사업자의 실질 수입이 감소하는 등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택시연료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111조의3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미디어 시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 증가로 콘텐츠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경쟁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음. 또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경우 거대 자본력으로 각국의 콘텐츠를 장악하고 있어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해외 플랫폼에 종속되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미국, 영국 등 콘텐츠 강국에서는 20 25% 수준으로 영화·드라마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는 가운데 최근 30% 이상으로 늘려, 3% 수준의 세제지원을 받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고용 창출, 소비 확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차세대 수출 산업인만큼 생존과 성장을 위한 지원이 절실함 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콘텐츠 산업 생태계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한류 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증대시키고자 함 (안 제25조의6)	2023-07-0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했음.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시장 포화 등의 이유로 OTT 구독자가 감소하는 등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을 증진하고 문화예술산업을 진흥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국민이 OTT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에 사용한 금액 외에 OTT를 시청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관련 문화예술산업을 진흥하려는 것임 (안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신설)	2023-07-06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간접세 특례를 두어 외국인관광객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또는 특정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나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 또는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하거나, 외국인관광객이 이용하는 숙박용역 또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외국인관광객의 선호도를 반영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외국인관광객의 구매를 촉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가운데, 최근 한류 및 K-뷰티 유행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용업·미용업이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를 우리나라 관광상품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이용업·미용업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07조의4 신설)	2023-07-0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일정한 운영비용 중 3년간 100분의 10을, 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에는 5년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 실업팀이 2018년 86개에서 2020년 71개로 감소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어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이스포츠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기한을 삭제해서 세액공제를 영구적인 제도로 전환하고, 세액공제 수준으로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경기부의 경우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3-07-07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62인)」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책임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2023-07-0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이와 같은 수신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방송법」 제67조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은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 기관의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위해 수탁 기관이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수신료 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수신료 통합징수는 ① 공영방송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 ② 통합징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수신료 수납률이 크게 향상되고 징수비용이 절감되는 효율적인 제도라는 점, ③ 수신료 부과금액 자체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소액의 수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킨다는 점, ④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과 시청자의 선택권 강화 및 다양한 방송 서비스 제공, 방송수신환경개선 등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방송법 시행령」 상의 수신료 결합고지가 현행 「방송법」 상의 수신료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라 할 것임 한편,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통합징수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방송통신위원장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신료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67조제3항)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제도와 관련하여 2010년 도입되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지정제도와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 규정은 도입 당시 3년 후 일몰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3차례의 부칙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22일로 연장되었음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 이른바 알뜰폰 시장의 초기 성장에 기여하였으나, 알뜰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앞으로도 일정기간 동안은 더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일몰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던 점을 감안할 때, 제도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도매제공 의무서비스의 유효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제도가 전기통신사업 분야의 경쟁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해당 제도의 연장 여부에 반영하여 향후 제도의 폐지·완화·연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신설 등)	2023-07-0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행정안전 위원회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위험물을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을 가지는 석유류 등으로 정의하고,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물의 제조·저장·취급소(이하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석유류 취급소에 해당하는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제재수단 이 없고 이러한 흡연행위로 인한 화재·폭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실정임 이에 제조소 등에서의 금연 및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각 200만원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인화·발화성 위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9조)	2023-07-05
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설 조성, 단체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게임 산업의 발전 및 이스포츠 진흥 정책 등에 따라 이스포츠 산업이 확장되며 이스포츠 선수 등 이스포츠인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이스포츠인 분야의 인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현행법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는 지역에 연고를 둔 프로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 또는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지역 기반의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있음. 이를 참조하여 이스포츠의 경우에도 지역 연고 기반의 전문 이스포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조 및 안 제5조제2항 신설)	2023-07-03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저작권 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저작재산권의 양도·처분 제한, 배타적발행권·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에 대하여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3-07-0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된 저작재산권이 저작자 개인의 계약으로 제3자에게 양도되고, 이를 별도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저작자가 제작사에 저작권 일체를 넘기는 이른바 ‘매절계약’ 관행이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은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면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을 신탁한 경우 등록 없이도 저작재산권의 양도·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에 대하여 제3자 대항력을 갖도록 하여,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해 양도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자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54조제2항, 제106조제1항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지능형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부품·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의 보급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로봇산업진흥원(2020년)에 따르면 로봇(지능형 로봇 포함)의 부품 중 제조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감속기와 서브모터 등 구동부의 국산화율은 15%에 불과하고, 센서부 27%, 소프트웨어 24% 등 로봇의 국산화율이 평균 43%에 그쳐 로봇 부품의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능형 로봇 부품의 국산화 비율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지능형 로봇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4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2023-07-03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어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입증요건이 과도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4조 및 제36조)	2023-07-0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국외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며,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 보유 기관 근무자의 외국기업 취업을 제한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 함 최근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17~’22)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17건임. 그 피해 규모는 26조원에 달함 해외 각국은 처벌 강화 추세인데, 우리나라 처벌 형량은 지나치게 낮아 국내 산업계도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경우, 기존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억 이하의 벌금에서 20억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마찬가지로,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경우도 기존 15년 이하의 징역에서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15억 이하의 벌금에서 2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아울러, ‘고의’로 기술 유출했더라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문제점도 해소하고자 하며, 해외유출 처벌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또한 외국기업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의 신상정보 공개도 포함하였으며, 이는 국내 산업기술 보호 강화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유사한 업종의 외국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 (안 제34조의2 신설) ②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유기징역을 상향하고 1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벌금을 상향하여 병과하며,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에서 2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1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벌금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 (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③ 법원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5년 동안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6조의3 신설)	2023-07-07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총전력생산량의 25% 이내의 범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할 것을 의무화함에 따라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2023-07-0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태양광 설비의 경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국내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현장 확인 없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산지 허위 기재 등의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3 신설)	2023-07-0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대행협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실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협의를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협의를의 요건을 삭제하여 대행협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공급원가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보완하고자 함 (안 제22조의2제2항)	2023-07-06
보건복지위원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권역별로 묶어서 권역별 경쟁을 통해 지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수도권과 권역이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수도권의 대형병원 등에 밀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음.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제주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 등으로 원정진료에 나서고 있음	2023-07-0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제주도에선 도외로 원정 진료를 떠난 도민은 11만 3,820명에 이르고 1,870억원의 의료비가 쓰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법률에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을 소외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 (안 제3조의4)	
환경노동위원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0인)」 현행 「근로기준법」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2018년 109만 명, 2019~2020년 130만 명, 2021년 151만 명, 2022년 157만 명) 이에 대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초단시간 근로와 일반 단시간 근로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휴식권이라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근로조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단시간 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아도 부당하다”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이에 「근로기준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18조제3항 삭제)	2023-07-0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바탕으로 업종별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규모를 사전에 결정하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그 목적을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장시간·고강도·저임금 노동과 같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하거나 사업주의 폭언·폭행 등 권익침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건수는 2017년 2만 3,885건에서 2021년 2만 9,376건으로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였음	2023-07-0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행법은 그 목적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관리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침해에 관한 조사·처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 등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현행 목적규정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관리와 인력수급에 더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장을 강조하고 관련 제도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조)	
국토교통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최근 국제사회는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교통부문을 포함한 산업 부문별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특히 유럽 등 주요 국가는 자동차 친환경성 평가제도인 ‘Green 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를 도입하여 자동차와 자동차연료 생산과정을 아울러 자동차 생산과 제조 전(全)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평가할 계획임 우리나라 또한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하는 유엔산하 회의기구인 ‘자동차 국제기준 조화기구(UNECE WP.29)’에 참여하여 전문가기술그룹의 의장국가로 활동하는 등 자동차의 전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기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의 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는 현행 자동차 성능 평가는 안전성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촉진과 보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서는 현행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친환경성 평가를 접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와 더불어 신규제작 자동차의 환경친화도 평가를 실시하고, 국제안전기준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자동차의 제작·생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의2 등)	2023-07-03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의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경쟁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상호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까지 2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진입 제한 제도를 두고 있음	2023-07-03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또한, 하위 규정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 5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경우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자의 수주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 취지와는 달리 종합건설사업자에 비해 기술인력, 자본금 등이 부족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입찰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사 수주량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이 3억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한시적인 진입 제한을 두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를 최소화하고, 전문기술력을 보호 및 육성하며,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상생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1항제4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4인)」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피해자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하나 그동안 자동차보험회사는 자동차를 배기량으로만 평가하는 등의 부적정한 손해배상 지급기준을 마련 후 일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심각히 침해해 왔으며, 이에 불복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게 소송을 남발하여 불합리한 사회적 비용마저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금융당국에서 자동차보험회사의 입장을 고려한 손해배상 원칙을 적용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사고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이와 연관된 사업자의 사업 수행을 근본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법원칙 위반의 중대한 문제도 발생시킨다는 의견도 존재함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정비협회를 법제화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서도 손해배상원칙을 공정하게 재정립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중재기구 마련이 필요함 이에 자동차보험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해소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의 원칙이 적용되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불합리한 분쟁을 해소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행법의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자동차보험분쟁조정협의회’로 확대하여 구성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2)	2023-07-05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7/12(수)	금주의 서평 제636호 발간 - 도서명 :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 - 저자:조연하	
	7/12(수)	「World&Law」 제2023-14호 발간 - 고령자를 위한 성년후견, 괜찮을까?	
	7/13(목)	「현안, 외국에선」 제62호 발간 - 일본 정부가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으로 발표한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	
예산정책처	7/11(화) 10:30	2023년도 제1차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별첨1】 제410회국회(임시회) 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산자중기위	7/12(수) 10:00	전체회의	- 법안 상정
	7/12(수) 14:00	중소기업소위	- 법안 심사
	7/13(목) 14:00	산업특허소위	- 법안 심사
외통위	7/13(목) 14:00	전체회의	- 간사 개선의 건 -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영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자료제출요구·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현안 보고
환노위	7/14(금) 10:00	전체회의	- 소위원장 개선의 건 - 현안 질의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위	7/13(목) 10:00	전체회의	- 제4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경쟁 프리젠테이션 결과보고 - 업무 보고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10(월) 10:30	2023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통합을 위한 정책토론회 - 11종류 손해사정사 자격증 제도 통합 해법은?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7/10(월) 14:00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 -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윤재옥·김태년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7/10(월) 14:00	한국 정치의 새판을 모색하는 정당 개혁 대토론회 - 새로운 정당들의 등장을 위해!	용혜인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7/10(월) 14:00	학생 마음 건강 챙김 국회 토론회	김병욱(국)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7/11(화) 10:00	바이오벤처 투자활성화 전략과 지원정책 모색	정일영·최재형 의원실, 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7/11(화) 13:30	대학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서병수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7/11(화) 14:00	TV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업계 간담회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7/11(화) 14:00	2023 반도체정책세미나 - 반도체 판이 바뀐다, K칩 생존 조건은	양향자 의원실, 메트로경제	의원회관 2세미나실
7/11(화) 14:00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토론회	양기대·최형두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7/11(화) 14:00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향한 스마트복지의 길 - 개도국에의 시사점	서정숙·이종성 의원실, 국제사회복지협의회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7/12(수) 07:30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조찬 토론회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분권적 재원지원 개편방안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의원회관 4간담회실
7/12(수) 10:00	방위산업 보안정책 세미나	양기대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7/12(수) 10:0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 원청갑질 사각지대 해 소 방안 토론회	김영진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12(수) 14:00	인공지능 교육시대,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역할	국회 유니콘팜	살롱드 여의도
7/12(수) 14:00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엄태영·박대수· 양금희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7/12(수) 15:00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인채권법 토론회	이수진(민)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7/13(목) 10:00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과 과제	강준현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7/14(금) 13:30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관련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	약자의 눈, 김천교육너머 등	의원회관 5간담회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92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7/4(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5호 발간 - 일본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입법례	
	7/5(수)	금주의 서평 제635호 발간 - 도서명 : 금리의 역습(금리는 어떻게 부의 질서를 뒤흔드는가) - 저자:에드워드 캔슬러	
예산정책처	7/7(금)	「NABO Focus 제60호」 발간 - 기초연금의 경제적 효과	
입법조사처	7/4(화)	「이슈와 논점」 발간 - 인공지능의 FATE(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윤리) 제고	
	7/6(목)	「이슈와 논점」 발간 -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국회의원실>

6/29(목)	제목	주최	장소
6/26(월) 14:00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메타버스와 윤리	국회신성장산업포럼	의원회관 1소회의실
7/5(수) 14:00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 - 미래 여성경제인을 위한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한무경·김한정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7/5(수) 15:00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박정하 의원실, 주택산업연구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7/6(목) 14:00	원전계속운전 주민 수용성 증진 세미나	한무경 의원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의원회관 1소회의실
6/30(금) 14:00	디지털교육 확산 및 에듀테크 진흥방안 수립 정책 간담회	김병욱(국), 김한정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5. 지난주 (7/3~7/9) 법무법인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분야	내용
7/3(월)	ESG	미국 및 EU 發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야: 美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의 집행 강화 및 EU 공급망실사지침(안) 입안 경과
7/3(월)	방송통신(TMT)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4-2026) 발표
7/4(화)	조세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시사점
7/5(수)	금융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광재 변호사	T. 02-316-1624	E. kjakim@shinkim.com
• 김성범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